

■ 간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

간호사 보수교육 [] 면제
[] 유예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5일
신청인	성명	면허번호	
신청사유	면제(유예) 신청 대상 연도		
	면제사유(「간호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) [] 1.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[] 2. 「간호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[] 3.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		
	유예사유(「간호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) [] 1.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「간호법」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[] 2.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		

「간호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간호사중앙회의 장 귀하

첨부서류	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수수료 없 음		
처리절차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	→ 검토	→ 사실 확인 등	→ 처리결과 통지	→ 수령 신청인
처리기관: 간호사중앙회					